

항목: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발행: 2012/6/26

번호: D-150

제목: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및 뉴욕시 75학군 위원회의 위원 선출 절차

페이지: 2 중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서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2010년 3월 24일 수요일자 교육감 규정서 D-150을 갱신 및 대체합니다.

변경 사항

- 다음과 같이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Special Education: CCSE)에서 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후보의 자격 요건을 변경합니다. 후보는 반드시 현재 교육청에서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개별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를 갖고 있는 학생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후보 자격은 부모가 CCSE에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IEP를 갖고 있어 자격을 갖추 수 있었던 자녀가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IEP를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봉사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페이지 1, 섹션.A.1.a 참조)
- 다음과 같이 뉴욕시 제 75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후보의 자격 요건을 변경합니다. 후보자는 반드시 75학군에서 뉴욕시 차원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여야 합니다. 후보 자격은 부모가 75학군 위원회에서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75학군에서 교육을 받고있어 자격을 갖춘 자녀가 더 이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75학군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활동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페이지 7, 섹션 II.B.1 참조)
- 교육감 규정 D-125를 고려하여 CCSE 및 75학군 위원회 활동시 적용되는 이해상충 규정을 갱신합니다. (페이지 2, 섹션 I.A.1.c.iii; 페이지 7, 섹션 II.B.1.c.iii 참조)
- CCSE 및 75학군 위원회 후보자는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 및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수 지원은 허용되나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접수시 복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자 지원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명시합니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조건부 선출된 후보자는 조건부 선출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명시한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페이지 2, 섹션 I.B.1; 페이지 7,-8 섹션 II.C.1.참조)
- CCSE 후보자는 현재 IEP를 갖고 있는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신청서에 기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후보자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IEP를 갖고 있는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학군의 대표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학군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페이지 2, 섹션 I.B.2참조)
- 현재 75학군 위원회 후보자는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75학군 학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신청서에 기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후보자는 각 학교의 대표로 간주됩니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학교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페이지 8, 섹션 II.C.2 참조)
- CCSE 및 75학군 위원회 모두의 선출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권고 투표 (advisory vote)가 선출 절차에서 제외되었으며 후보자 포럼(Nominees' Forums)을 진행하는 절차가 갱신되었습니다. (페이지 2-3, 섹션 I.D; 페이지 8, 섹션 II.E 참조)
- CCSE 선출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많은 표를 얻은 7인의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되며 75학군을 제외한 학군에서는 CCSE에 한 명 이상의 대표를 보유할 수 없으며, 75학군에서는 2명 이상의 CCSE 대표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2) 만약 75학군 학부모 두 명이, 가장

항목: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발행: 2012/6/26

번호:

D-150

제목: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및 뉴욕시 75학군 위원회의 위원 선출 절차

페이지:

2 중 2

많은 표를 얻은 학부모 7인에 포함되어 조건부로 선출되었다면, 75학군이 아닌 학군은 한 명 이상의 학부모 대표를 CCSE에 보낼 수 없다는 제한 조항에 따라, 이전에 선출되지 못했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인이 CCSE의 두 개의 남은 직책에 조건부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3) 만약 75학군 학부모 두 명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학부모 7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건부로 선출되었다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명의 75학군 학부모가 조건부로 선출됩니다. (페이지 3, 섹션 I.E.1.c. 참조)

- 같은 학군 (75학군 외) 또는 두 명 이상의 75학군 학부모 사이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개 이상의 의석이 총원되지 않아 CCSE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고 CCSE에 대변되지 못한 학군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페이지 3-4, I.E.1.d.ii 참조)
- 같은 학교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개 이상의 의석이 총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며 75학군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대표가 없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페이지 9, 섹션 II.F.c.ii 참조)
- CCSE 또는 75학군에 대한 복수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결선투표는 별도의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며 규정서의 요건에 따라 후보자가 분류됩니다. (페이지 4, 섹션 I.E.1.d.v; 페이지 9, 섹션 II.F.c.iv 참조)
- CCSE 및/또는 75학군 위원회에 대한 공익 옹호관 (Public Advocate)의 지명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페이지 4, 섹션 I.E.2; 페이지 9-10, 섹션 II.F.2 참조)
- CCSE 및/또는 75학군 위원회에 공식 총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CCSE, 75학군 위원회 또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 (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에서 지원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페이지 6, 섹션 I.I.b; 페이지 11, 섹션 II.J.b 참조)
- “가정 참여 지원실(OFEA)”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요

본 규정서는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CCSE) 및 75학군 위원회(D75 Council)에 대한 자격 요건과 추천 및 선출 절차를 관장하며 75학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또한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상기 위원회들은 11명의 투표권이 있는 위원과 1명의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CCSE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 중 9명은 반드시 본 규정서에서 제창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개별교육 프로그램(IEP)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며 나머지 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관 (Public Advocate)이 임명합니다. 75학군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 중 아홉 명은 반드시 본 규정서에서 제창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75학군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며 나머지 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관이 임명합니다. CCSE 및 75학군은 뉴욕 공개회의 법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I. 뉴욕시 특수교육위원회

A. 자격 요건

1. 학부모 위원 및 공익 옹호관 지명인:

- a. ¹현재 교육청에서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IEP를 갖고 있는 학생의 부모는 CCSE에서 자신을 추천할 자격이 있습니다. 후보 자격은 부모가 CCSE에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IEP를 갖고 있어 자격을 갖추 수 있었던 자녀가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IEP를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봉사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²
- b.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 i. 선출직 공무원, 정당의 선출 또는 임명 보직(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 제외)을 맡고 있는 사람;
 - ii. 현재 뉴욕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 iii.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뉴욕시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에서 해당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이런 위원회 또는 CEC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 iv. 다른 뉴욕시 위원회 또는 기타 CEC에 소속된 사람
- c.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봉사 자격이 없습니다:
 - i. 교육 정책 패널 위원;
 - ii. 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타이틀 I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학교 이사회에서 해당 협회, 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해당 협회, 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이사회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¹ 학부모란 부모 (출산 또는 입양,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법률적인 보호자 또는 아이와 부모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으로 정의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² 법령에 따라, CCSE의 모든 학부모 위원은 IEP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여야 합니다.

- iii. 교육청 윤리담당관 또는 교육감 규정 D-125에 따라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³

2. 학생

위원회에서 봉사할 해에 12학년이 되는 IEP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CCSE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규정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약 30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12학년으로 간주합니다.

B. 학부모 추천

1. CCSE에서 봉사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다음의 온라인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www.nycparentleaders.org. 후보자는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 및/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지원은 허용되나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접수시 복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자 지원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조건부 선출된 후보자는 조건부 선출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명시한 위원회에 배치됩니다.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는 신청서 제출 일정을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www.nycparentleaders.org.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FACE에 연락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학교 및 로컬 기관들의 목록에 대해 문의합니다.
2. 후보자는 IEP를 갖고 있는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신청서에 기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후보자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IEP를 갖고 있는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학군을 대표할 것이 고려됩니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학군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3. 학부모 및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각 후보의 신청서 일부 (성명,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기 소개와 봉사 내역 및 개인 성명)가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www.nycparentleaders.org.

C. 선출자(Selectors)

각 커뮤니티 학교 학군 및 보로와 제 75학군의 회장 위원회는 회원 중 IEP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1인을 선발해 CCSE 회원의 선출자로 봉사하도록 합니다. 회장 위원회에 IEP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없는 경우 회장 위원회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군 또는 보로에서 IEP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중 선출자로 봉사할 사람을 모집해야 합니다. 회장 위원회는 자원한 학부모 중 1인을 선발해 CCSE 선출자로 봉사하도록 합니다. CCSE의 후보인 학부모는 선출자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D. 후보자 포럼

1. FACE에서 CCSE에서 봉사할 후보자들이 선출자 및 기타 학부모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할 것이 허용되는 후보자 포럼을 주관합니다.
2. 후보자 포럼은 반드시 후보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5월 두번째 화요일 지명된 선출자가 투표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FACE는 후보자 포럼이 진행될 교육청 장소, 날짜 및 적절한 시간을 결정하고 후보자 포럼 진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합니다. FACE에서 후보자 포럼과 관련된 모든 필수

³ 본 규정서의 섹션 I.A.1.b 및 I.A.1.c는 또한 공익 옹호관의 지명인에도 적용됩니다.

허가서 취득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FACE는 후보자 포럼에서 배포될 CCSE 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의 성명과 자기 소개를 포함한 CCSE- 특화 후보자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FACE는 필요하다면 후보자 포럼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지원을 합니다.

E. 선출 절차

1. 학부모 위원 선출 (투표)

- a. 선출자는 투표를 위해 반드시 www.nycparentleaders.org에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한 후, 선출자는 CCSE 및 선출자들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학군 (만약 후보자의 자녀가 75학군 고등학교가 아닌 곳에 재학중인 경우, 또는 보로)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한 투표권을 제공받게 됩니다. 각 선출자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FACE에서 투표용지 제출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선출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 b. CCSE에 9명의 학부모(투표할 수 있는) 위원들의 직책 중 최소 2석은 반드시 자녀가 75학군에 등록된 학부모 후보자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후 "75학군 학부모"라고 칭함). 나머지 7석은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 c.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 i. 가장 득표수가 많은 7인의 후보가 조건부 선발됩니다. 그러나 섹션 I.E.1.c.iii에 제공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75학군 외의 어떤 학군에서도 CCSE에 1인 이상의 학부모 대표를 갖지 않도록 합니다. 섹션 I.E.1.c.iii를 제외하고는 75학군에서 CCSE에 2인 이상의 학부모 대표를 갖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동일한 학군 (75학군 외)에서 한 명 이상의 후보자가 선출되었거나 75학군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선출되었다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 적은 투표를 받은 동일한 학군의 다른 후보자는 고려에서 제외되며 아직 CCSE에 대표를 보유하지 못한 학군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조건부로 선출된것으로 간주됩니다.
 - ii. 만약 75학군 학부모 두 명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일곱 명의 후보들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건부로 선출되었다면, 섹션 I.E.1.c.iii에 제공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75학군 외의 어떤 학군에서도 CCSE에 1인 이상의 학부모 대표를 갖지 않도록 한다는 제한 규정에 따라 이전에 선출되지 않았던 두 명의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CCSE의 남은 두 석을 채우도록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75학군 학부모 두 명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일곱 명의 후보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건부로 선출되었다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두 명의 75학군 학부모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섹션 I.E.1.c.iii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 번째 75학군 학부모는 CCSE에 조건부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 iii. 섹션 I.E.1.c.i 및 I.E.1.c.ii에 설명된 제한 규정은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했을 때 CCSE에 아홉 명 이하의 학부모 위원이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d. 후보자 양자 또는 그 이상이 동일한 투표를 얻거나 또는 처음에 아홉 명 이하의 후보자가 선출된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각 선출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합니다.
 - i. CCSE 위원석의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투표로 인해 재선거가 필요할 때, 동일한 투표수를 얻었던 후보자들 만이 결선 투표에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 ii. 같은 학군 (75학군 외) 또는 두 명 이상의 75학군 학부모 사이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섹션 I.E.1.c.i 및 I.E.1.c.ii 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 이상의 의석이 총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고 CCSE에 대변되지 못한 학군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결선 투표의 실패가 모든 의석을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섹션 I.E.1.c.iii에 정해진 예외가 적용됩니다.
 - iii. 만약 두 명 이하의 75학군 학부모가 선출되어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75학군 학부모 후보자들만이 결선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 iv. 섹션 I.E.1.d.i, I.E.1.d.ii, 및 I.E.1.d.iii에 정해진 바 외의 이유로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이 공석으로 남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는 결선 투표에서 선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 v. 상기 섹션 I.E.1.d.i, I.E.1.d.ii, I.E.1.d.iii, 및 I.E.1.d.iv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번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결선 투표는 동일한 시간에 그러나 각기 다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vi. 만약 결선 투표 절차를 통해서도 모든 의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상기 섹션 I.E.1.d.i, I.E.1.d.ii, I.E.1.d.iii, 및 I.E.1.d.iv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격 사항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최초 선출 절차와 결선 투표에서 표를 전혀 얻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I.1.b 및 I.I.1.c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의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둡니다.
- e. 75학군을 위해 준비해둔 의석이 아닌 의석을 채우도록 선출된 후보자가 선출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25일 및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다면, CCSE에 이미 대표를 선출한 학군이 아닌 학군의 최초 선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⁴ 75학군을 위해 준비해둔 의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후보자의 경우, 최초 선출 절차에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75학군 학부모 후보자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위에 명시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동점이 되는 경우,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만약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는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I.1.b 및 I.I.1.c 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CCSE에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둡니다.
- f.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뉴욕시 공익 옹호관 지명

뉴욕시 공익 옹호관은 투표권을 가진 두 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두 위원들은 반드시 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교육, 훈련 또는 고용 관련 분야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뉴욕시 학교들의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공익 옹호관의 지명을 원하는 CCSE 후보자는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⁴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 25일 이후에 실격 사유가 발생한다면, 본 규정서의 공석 처리 절차 섹션 I.I.1.b 및 I.I.1.c가 적용됩니다.

3. 학생 위원 지명 (투표권 없음)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은 IEP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한 명이 CCSE에서 봉사하도록 선출합니다.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F. 조건/자격의 검토

후보자의 조건부 선출 이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인은 후보자가 CCSE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교육감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면, FACE의 보로 및 중앙 사무실에서 교육감의 결정 내용이 공적인 조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표후 7일 내 제공될 것입니다. 해당 결정에는 이런 발표에 대한 사실 및 법률적 근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후보자는 CCSE에 이미 대표를 선출한 학군 출신이어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G. 일정

CCSE 위원은 2011년 5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선출되며 이 후 매 2년 후에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출 절차는 90일 동안에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절차의 대중 공개가 허용되는 시간, 학부모 후보, 후보 포럼 및 선출자의 투표 기간이 포함됩니다. FACE는 이 규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정확한 일정을 게시합니다.

H. 사직

1. 학부모 멤버

학부모 위원 사직은 반드시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의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이 교육감 대리인으로서 사직서를 접수하도록 지명합니다. 이런 사직서는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2. 공익 옹호관 지명인

공익 옹호관이 임명한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공익 옹호관 앞으로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향후 날짜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한(이 역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나서는 안됨), 공익 옹호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익 옹호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3. 학생 위원

학부모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을 교육감을 대리하여 사직서를 접수하도록 지명합니다. 이런 사직서는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I. 공석

1. 학부모 및 공익 옹호관 지명 위원의 공석

a. 만약 CCSE 위원이 본인의 임기 동안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통보하고 CCSE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직책에서 제명 됩니다.⁵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의 모든 불참은 CCSE의 업무 총괄(Administrative Assistant) 또는 회장이 공익 옹호실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없이 3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서 해결 방안으로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교육감(또는 적용되는 경우 공익 옹호실)에게 이런 상황을 통보합니다.

- b. 임기가 남아 있는 CCSE의 위원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CCSE는 공개 회의에서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 CCSE는 학부모 공석을 채우기 전에 IEP를 갖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와 논의합니다. CCSE의 학부모 위원 공석을 채우는데 관심있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CCSE 또는 FACE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 만약 후보간에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일 내에 CCSE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합니다. CCSE에서 기타 이유로 60일 이내에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이 공석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 d.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봉사를 할 위원을 지명합니다. 공익 옹호관의 지명 위원의 공석을 채우길 원하는 후보자는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의 공석 발생의 경우에는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도 담당관은 IEP를 갖고 있는 자격을 갖춘 다른 졸업반 학생이 남은 임기를 마치도록 지명합니다.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도 담당관은 FACE 및 CCSE에 자신의 지명에 대해 알리도록 합니다.

II. 제 75 학군 위원회

A. 의무와 책임

1. 75학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 a. 75학군 교육 규정과 관련된 고습 및 지도 정책에 대한 조언과 의견 제시;
 - b. 75학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뉴욕시 학군의 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례 보고서 발표 및 적절한 경우 이런 교육의 효율성과 전달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천; 및
 - c. 최소 월 1회 이상 일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75학군 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현안에 관해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 75학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비서를 고용, 감독, 평가 및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a. 회의 공지, 안건 및 기록 준비;
 - b. 의사록 및 기타 75학군 위원회 회의 기록과 유지 및

⁵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상참작 가능한 불참 사유로 유효합니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CCSE 위원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의무적인 법원 출석, 군인의 의무, CCSE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CCSE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

c. 회의를 위한 간단한 보고 자료와 기타 관련 정보 취합 준비.

B. 자격 요건

1. 학부모 위원 및 공익 옹호관 지명인:

a. 뉴욕시 차원의 특수교육 서비스(75학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만이 75학군 위원회에서 본인을 추천할 자격이 있습니다. 후보 자격은 부모가 75학군 위원회에서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75학군에서 교육을 받고있어 자격을 갖춘 자녀가 더 이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75학군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활동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b.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 i. 선출직 공무원, 정당의 선출 또는 임명 보직(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을 맡고 있는 사람;
- ii. 현재 뉴욕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 iii.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뉴욕시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에서 해당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이런 위원회 또는 CEC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 iv. 다른 뉴욕시 위원회 또는 기타 CEC에 소속된 사람

c.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봉사 자격이 없습니다:

- i. 교육 정책 패널 위원;
- ii. 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타이틀 I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학교 이사회에서 해당 협회, 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해당 협회, 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이사회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 iii. 교육청 윤리담당관 또는 교육감 규정 D-125에 따라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⁶

2. 학생 위원

위원회에서 봉사할 해에 12학년이 되는 75학군 고등학교 학생들은 75학군 위원회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규정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약 30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12학년으로 간주합니다.

C. 학부모 추천

1. 75학군에서 봉사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다음의 온라인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www.nycparentleaders.org. 후보자는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 및/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지원은 허용되나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접수시 복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자 지원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조건부 선출된 후보자는 조건부 선출된

⁶ 본 규정서의 섹션 II.B.1.b 및 II.B.1.c는 또한 공익 옹호관의 지명인에도 적용됩니다.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명시한 위원회에 배치됩니다.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는 신청서 제출 일정을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임: www.nycparentleaders.org.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FACE에 연락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학교 및 로컬 기관들의 목록에 대해 문의합니다.

2. 후보자는 자녀가 재학중인 각 75학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지원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각 학교의 대표로 간주됩니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학교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3. 학부모 및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각 후보의 신청서 일부 (성명,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기 소개와 봉사 내역 및 개인 성명)가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www.nycparentleaders.org.

D. 선출자

75학군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의 선출자는 교육감 규정서 A-660에 명시된 각 75학군 학교의 PA/PTA 임원 3명(예: 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됩니다.⁷ 75학군 위원회의 후보인 학부모는 선출자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E. 후보자 포럼

1. 75학군 회장 위원회는 FACE와 협력하여 75학군 위원회에서 봉사할 후보자들이 선출자 및 기타 학부모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할 것이 허용되는 후보자 포럼을 주관합니다.
2. 후보자 포럼은 반드시 후보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5월 두번째 화요일 지명된 선출자가 투표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75학군 회장 위원회는 후보자 포럼이 진행될 교육청 장소, 날짜 및 적절한 시간을 결정하고 후보자 포럼 진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할 것입니다. FACE에서 후보자 포럼과 관련된 모든 필수 허가서 취득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3. FACE는 후보자 포럼에서 배포될 해당 75학군 위원회 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의 성명과 자기 소개를 포함한 75학군 위원회 후보자 책자 사본을 75학군 회장 위원회에 제공합니다. FACE는 필요하다면 후보자 포럼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지원을 합니다.

F. 선출 절차

1. 학부모 위원 선출 (투표)
 - a. 선출자는 투표를 위해 반드시 www.nycparentleaders.org에 로그인 하여야 하며 로그인 후, 선출자에게 75학군 위원회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한 투표권이 제공 됩니다. 각 선출자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FACE에서 투표용지 제출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b.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 i. 가장 득표수가 많은 9인의 후보가 조건부 선발됩니다. 그러나 섹션 II.F.1.b.ii에 제공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도 75학군 위원회에 1인 이상의 대표를 갖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동일한 학교에서 한 명 이상의 후보가 선출되었다면, 더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 적은 투표를 받은 해당 학교의 다른 후보자는 고려에서 제외되며 아직 75학군 위원회에 대표를 보유하지 못한 학교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⁷ 공동 회장, 공동 서기 또는 공동 회계의 경우 나머지 PA/PTA 임원회 회원들이 어떤 임원이 선출자로 봉사할지 결정합니다.

- ii. II.F.1.b.i 에 설명된 제한 규정은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했을 때 아홉 명 이하의 학부모가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 후보자 양자 또는 그 이상이 동일한 투표를 얻거나 또는 처음에 아홉 명 이하의 후보자가 선출된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각 선출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합니다.
 - i. 75학군 위원회 위원석의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투표로 인해 재선거가 필요할 때, 동일한 투표수를 얻었던 후보자들 만이 결선 투표에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 ii. 섹션 II.F.1.b.i 에 정해진 바와 같은 학교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개 이상의 의석이 총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이미 선출되지 않고 75학군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대표가 없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결선 투표의 실패가 모든 의석을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섹션 II.F.1.b.ii 에 정해진 예외가 적용됩니다.
 - iii. 섹션 II.F.1.c.i 및 II.F.1.c.ii에 정해진 바 외의 이유로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이 공석으로 남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은 모든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선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 iv. 상기 섹션 II.F.1.c.i, II.F.1.c.ii 및 II.F.1.c.iii 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번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여러번의 결선 투표는 동일한 시간에 섹션 II.F.1.c.i, II.F.1.c.ii and II.F.1.c.iii 요건을 준수하는 후보자 그룹 별로 각기 다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v. 만약 결선 투표를 통해서도 모든 의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상기 섹션 II.F.1.c.i, II.F.1.c.ii 및 II.F.1.c.iii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격 사항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추천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최초 선출 절차와 결선 투표에서 표를 전혀 얻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I.J.1.b 및 II.J.1.c 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의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둡니다.
- d. 선출된 후보자가 선출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25일 및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다면, 최초 선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⁸ 만약 위에 명시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동점이 되는 경우,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만약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는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I.J.1.b 및 II.J.1.c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75학군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둡니다.
- e.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뉴욕시 공익 옹호관 지명

뉴욕시 공익 옹호관은 투표권을 가진 두 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두 위원들은 반드시 장애인의 교육, 훈련 또는 고용 관련 분야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 춘 뉴욕시 학교들의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익 옹호관의 지명을 원하는 75학군 후보자는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서

⁸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 25일 이후에 실격 사유가 발생한다면, 본 규정서의 공석 처리 절차 섹션 II.J.1.b 및 II.J.1.c 가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얻어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학생 위원 지명 (투표권 없음)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은 75학군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한 명을 75학군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출합니다.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G. 조건/자격의 검토

후보자의 조건부 선출 이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인은 후보자가 75학군 위원회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교육감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면, FACE의 보로 및 중앙 사무실에서 교육감의 결정 내용이 공적인 조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표후 7일 내 제공될 것입니다. 해당 결정에는 이런 발표에 대한 사실 및 법률적 근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후보자는 75학군 위원회에 이미 대표를 선출한 학교가 아닌 학교의 후보자인 경우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H. 일정

75학군 위원은 2011년 5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선출되며 이 후 매 2년 후에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출 절차는 90일 동안에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절차의 대중 공개가 허용되는 시간, 학부모 후보, 후보 포럼 및 선출자의 투표 기간이 포함됩니다. FACE는 이 규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정확한 일정을 게시할 것입니다.

I. 사직

1. 학부모 멤버

학부모 위원 사직은 반드시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의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이 교육감 대리로 사직서를 접수하도록 지명합니다. 이런 사직서는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2. 공익 옹호관 지명인

공익 옹호관이 임명한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공익 옹호관 앞으로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향후 날짜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한(이 역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나서는 안됨), 공익 옹호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익 옹호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3. 학생 위원

학부모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을 교육감을 대리하여 사직서를 접수하도록 지명합니다. 이런 사직서는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J. 공석

1. 학부모 및 공익 옹호관 지명 위원의 공석

- a. 만약 75학군 위원이 본인의 임기 동안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직책에서 제명 됩니다.⁹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익 옹호관이 지명한 위원의 모든 회의 불참은 75학군 위원회의 업무 총괄 또는 회장이 공익 옹호실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없이 3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서 해결 방안으로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교육감(또는 적용되는 경우 공익 옹호실)에게 이런 상황을 통보합니다.
- b. 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75학군 위원회는 공개 회의에서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 75학군 위원회는 학부모 공석을 채우기 전에 75학군 회장 위원회와 함께 논의합니다. 75학군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공석을 채우는데 관심있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75학군 위원회 또는 FACE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 만약 후보간에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일 내에 75학군 위원회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합니다. 75학군 위원회에서 기타 이유로 60일 이내에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이 공석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 d.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봉사를 할 위원을 지명합니다. 공익 옹호관의 지명 위원의 공석을 채우길 원하는 후보자는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의 공석 발생의 경우에는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도 담당관은 75학군의 자격을 갖춘 다른 졸업반 학생이 남은 임기를 마치도록 지명합니다.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도 담당관은 FACE 및 75학군 위원회에 자신의 지명에 대해 알리도록 합니다.

III. 이의제기 절차

본 규정의 준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지 5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게 된 특정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IV. 기술적 지원

FACE에서 본 규정서에 포함된 절차의 실행에 관해 총괄하며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u>전화:</u>	<i>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i>	<u>팩스:</u>
212-374-2323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212-374-0076

⁹ 다음과 같은 경우 정상참작 가능한 불참 사유로 유효합니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75학군 위원회 위원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의무적인 법원 출석, 군인의 의무, 75학군 위원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75학군 위원회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